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84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배준영 · 추경호 · 김석기
김위상 · 서명옥 · 서지영
김성원 · 이상휘 · 조은희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제4호의 경우에는 <u>2027년 12월 31일</u>)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p> <p>1. ~ 5. (생략)</p> <p>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p>	<p>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8년</u> <u>12월 31일</u>-----<u>2</u> <u>030년 12월 31일</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2028년 12월 31</u> <u>일</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u> <u>2월 31일까지</u> 지방세를 경감한 다. 1.·2. (생략)</p>	<p>-----<u>2028년 1</u> <u>2월 31일</u>----- --. 1.·2. (현행과 같음)</p>
--	--